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06
----------	-------

발의연월일 : 2026. 8. 21.

발 의 자 : 김용태 · 김성원 · 조은희
강승규 · 조정훈 · 박충권
이소희 · 김태호 · 신성범
김재섭 · 이성권 · 강대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상 투표권자는 회원인 조합이며, 실제로는 그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이 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음.

그런데 선출 과정에서 조합원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조합장 개인의 판단에 따라 투표권이 행사될 소지가 있고, 전체 조합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한편, 최근 추진되고 있는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을 위한 조합원 직선제 개편안은 이러한 조합원 총의 미반영 문제를 조합원 개인의 직접투표로 해결하고자 하나,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음.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조직(2차 협동조합)이므로 투표권자를 조합원 개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러한 지배구조

의 본질을 변경하는 것이고, 회원조합 간 조합원 수의 격차를 그대로 전국 단위로 합산할 경우 조합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하며, 판매 실적 등을 기준으로 한 선거인단 구성 방안까지 함께 검토되는 경우 협동조합의 민주적 관리 원칙 및 평등원칙에도 반할 소지가 있음.

이에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과정에서 각 회원인 조합이 그 조합의 총회 의결로确定的한 지지 후보를 그 조합의 의사로 하여 조합별로 집계하여 회장을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장 개인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를 배제하면서도 회원인 조합 단위의 의사결정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설치된 조합 감사위원회는 그 위원 선임 절차 및 직무수행상 독립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중앙회장 및 임직원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된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합감사위원회를 중앙회 내 법정 독립기구로 유지하되, 위원 구성을 농림축산식품부·대한변호사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각 1명, 중앙회장 추천 2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회장 추천 위원을 제외한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으로써, 위원 구성의 독립성 강화 및 종전 위원장이 사실상 회장의 영향 하에 정해지던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7년에 실시하는 동시조합장 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만료일까지로 정함으로써, 그 다음 농

협중앙회 회장선거부터는 동시조합장선거와 임기 주기가 일치하도록 함(안 제35조 등).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회장지지 후보의 확정

제65조제4항 중 “100인”을 “40인”으로 한다.

제123조제3호 중 “임원 및 조합감사위원장”을 “임원”으로 한다.

제125조의5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30조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회장은 각 회원조합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총회의 의결로 확정
한 후보자에게 그 조합에 한 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선출하며, 이
를 후보자별로 합산한 결과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

⑫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자를 지체 없이 총
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는 별도의 표결 절차 없이 선출된 자를
추인하여 회장으로 확정한다. 이 경우 총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
장의 추인을 지연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⑬ 제12항에도 불구하고 개표·집계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인을 보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⑭ 제12항 및 제13항에 따른 회원 조합의 지지 후보 확정, 보고와 재확인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3조제1항 중 “중앙회에 회원의”를 “중앙회에 회원 및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조합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회장 및 임직원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제144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과 위원은”을 “위원은”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총회에서 임명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2.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중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② 위원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장 선출에 관한 적용례 및 임기의 특례) ① 제130조제1항, 제12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7년에 실시하는 동시조합장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3조(조합감사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123조, 제125조의5, 제143조 및 제1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총회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 5. (생 략) <신 설> 6. ~ 11. (생 략) ② (생 략)	제35조(총회의결사항 등) ① --- ----- -----. 1. ~ 5. (현행과 같음) <u>5의2. 회장지지 후보의 확정</u> 6. ~ 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5조(운영의 공개) ① ~ ③ (생 략) ④ 조합원은 조합원 <u>100인</u> 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역농협의 회계장부 및 서류 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을 청 구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제65조(운영의 공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40인</u> ----- ----- ----- ----- -----. ⑤·⑥ (현행과 같음)
제123조(총회의 의결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1.·2. (생 략) 3. <u>임원 및 조합감사위원장의</u> 선출과 해임 4.·5. (생 략)	제123조(총회의 의결 사항) ---- ----- -----. 1.·2. (현행과 같음) 3. <u>임원</u> ----- ----- 4.·5. (현행과 같음)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① -----

위하여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1. ~ 3. (생략)

4. 제144조제1항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장

② ~ ④ (생략)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제12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하여 두 표까지 행사한다.

② ~ ⑪ (생략)

<신설>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① 회장은 각 회원조합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총회의의결로 확정된 후보자에게 그 조합에 한 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선출하며, 이를 후보자별로 합산한 결과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 -----

② ~ ⑪ (현행과 같음)

⑫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자를 지체없이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는 별도의 표결 절차 없이 선출된 자를 추인하여 회장으로 확정한다. 이 경우 총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장의 추인을 지연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신 설>

제143조(조합감사위원회) ① 회원
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
하여 중앙회에 회원의 업무를
지도·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
사위원회를 둔다.

②·③ (생략)

<신 설>

제144조(위원의 선임 등) ① 조합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추
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⑬ 제12항에도 불구하고 개표
· 집계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
로 추인을 보류하고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 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⑭ 제12항 및 제13항에 따른
회원 조합의 지지 후보 확정,
보고와 재확인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3조(조합감사위원회) ① ---

-----중앙회에 회원 및 제112
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
인의-----.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조합감사위원회는 그 직무
를 수행하는 때에는 회장 및
임직원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
를 수행한다.

제144조(위원의 선임 등) ① 위원
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
람으로 하며, 총회에서 임명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서 선출한다. 다만, 조합, 중앙

회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에서 최근 3년 이내
에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 이
외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
은 제외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提請)
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
만, 회원의 조합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
장과 위원은 감사, 회계 또는
농정(農政)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
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다. -----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
하는 사람 1명

2.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
는 사람 1명

3.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추
천하는 사람 1명

4. 중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
람 2명

② 위원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은-----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